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자료문의 : 가스산업과 김용래 과장(2110-4894), 송지현 사무관 (2110-5468)

6.30(토)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4.9% 인상

- 가스공사 자구노력 확대(5,014억) 및 요금제도 개선 추진 -

□ 지식경제부(장관:홍석우)는 6월 30일(토)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밝힘

< 도시가스 요금 용도별 인상률(6.30) >

구 분	평균	주택용	업무난방	산업용	일반용	열병합1	열병합2	열전용
인상률(%)	4.9	5.0	4.0	5.6	4.9/5.2	5.4	4.2	4.8

* 일반용은 영업용1(4.9)과 영업용2(5.2)로 구분

○ 이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LNG 도입단가 인상요인과 금년도 도매공급비용* 인하요인을 반영한데에 따른 것임

* 천연가스의 공급에 소요된 총비용(=총괄원가)을 판매물량으로 나눈 단가

○ 금번 요금인상으로 일반가정은 월평균 약 711원 정도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4인가구 7월 평균사용량 17㎥ 기준

□ 당초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5~6월에 약 16.6%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서민부담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4.9%로 최소화하였으며,

○ 가스공사는 금번 요금조정과 함께 약 5,014억원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는 한편,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금 모금운동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할 계획

* 예산절감 600억원, 해외지분투자수익 1,610억원 등

□ 한편, 지식경제부는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통한 중장기적인 가스요금 인하 유도를 위해 요금제도 개선을 추진

○ 금년 하반기부터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위해 가스냉난방 공조요금*을 신설하는 한편,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위한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일반용'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

* 가스냉난방 공조요금 : 기존에 하절기(5~9월)에만 적용하던 가스냉방 요금을 '냉난방 공조요금'으로 변경하여 하절기 이외 기간의 요금부담을 완화

* 계절별 차등요금제 시행현황(現) : 발전용, 열병합용1·2, 산업용

< 첨부 >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표('12.6.30 기준)

〈 참고 〉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표('12.6.30 기준)

(단위 : 원/㎥, VAT 별도, 서울시 기준)

구 분 (도매)	구 분 (소매)	현 행	변 경
주택용	취 사 용	826.84	868.67
	개별난방	832.29	874.12
	중앙난방	832.29	874.12
업무난방용		874.15	908.73
일반용 (영업용1)	동절기	870.20	917.56
	하절기	870.20	908.87
	기타월	870.20	908.87
일반용 (영업용2)	동절기	826.58	873.94
	하절기	826.58	865.25
	기타월	826.58	865.25
냉난방 공조용 (하절기: 5~9월)	동절기	-	906.62
	하절기	535.45	567.18
	기타월	-	868.56
산업용	동절기	784.83	829.54
	하절기	763.19	806.34
	기타월	765.46	806.34
열병합용1	동절기	834.96	883.54
	하절기	789.80	830.70
	기타월	804.28	840.37
열병합용2	동절기	822.99	861.74
	하절기	781.66	817.60
	기타월	786.61	817.60
열전용설비용		887.29	929.90
수송용		861.58	904.54
평 균		**815.78**	**856.08**

* 주택용 기본요금(가구당 840원)은 요금표와는 별도
* 동절기: 12월~3월, 하절기 : 6~9월, 기타월 : 4~5월과 10~11월
* 영업용1 :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구내식당, 세탁용, 학교 급식시설 등
 영업용2 : 욕탕업, 폐기물 처리(소각, 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등